

##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3. 4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  
이경자 부위원장  
송도균 위 원  
형태근 위 원  
양문석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에 해당됨.

바. 의결사항

1) 「전파법 시행령」 등 4개 법령 일괄정비에 관한 건 - (2011-14(서)-055)

○ '5%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계획'에 따라 마련된 「전파법 시행령」 등 4개 법령 일괄정비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-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경고가산금 제도의 도입, 수수료 산정과정의 투명화 및 가산금 상한 제한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

< 법령별 정비내용 >

제 명	주 요 내 용
전파법 시행령	○ 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경고가산금 도입 (1주일 이내 납부시 5/100 → 1/100) ○ 무선국 검사 수수료 산정과정 투명화 추진
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○ 방송통신발전기금 체납에 대한 경고가산금 도입 (1주일 이내 납부시 3/100 → 1/100)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	○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 제한 (무제한 → 60개월)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	○ '정보보호 기술인력'의 3년제 전문학사에 대한 경력 보유기간 1년 단축 (정보보호 : 4년→3년, 정보통신 : 5년→ 4년)

2) 「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14(서)-056)

○ 3개 부처(방송통신위원회, 지식경제부, 국토해양부) 합의에 따라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기술표준의 적용시기 조정 등을 위한 「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」 (고시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- (제25조제3항) 새로 제정된 상호연동 규격(KS X 4501)을 명시

- (부칙 제1조) 적합성 평가기관 선정, 인증을 위한 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3항의 적용시기를 '12. 1. 1일까지 유예(당초안은 '11년 3월까지 유예)